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2. 14 선고 2018가단183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. 17.

판결 선고 2019. 2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1996. 2. 9. 접수 제60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해덕진

별지